

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

2019. 11. 22.



환 경 부
폐자원관리과

목 차

I. 배경 및 목적	1
II. 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	1
III. 일회용기저귀 배출·처리 업무처리 지침	3
1. 의료기관 등 배출자	3
2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업체	7
3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	8
4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	8
5. 관할기관(지자체·환경청)	9
IV. 행정사항	12
[붙임]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	13

◆ 개정된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, 시행규칙이 '19. 10. 29일자로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

◆ 다만,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.

- '19.12.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- '19.12.31 이후라도, 의료기관·처리업체 간 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◆ 경과조치 기간('19.10.29~'19.12.31) 동안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, 일회용기저귀 배출·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배경 및 목적

-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(5년새 1.4배 증가) 대비 처리시설 태부족
 -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 절실

- 일반폐기물*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,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

* 가정 발생 기저귀,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등

II. 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

□ 법령개정 내용

- (분류)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△감염병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것, △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
- (처리기준)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(이하 "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")는 개별밀폐포장, 전용봉투 배출, 별도 보관장소 보관, 냉장차량 운반
 - 사업장생활계수집·운반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운반할 경우 냉장차량 구비 필수

< 「폐기물관리법」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>

시행령	분류	기 존	개 정
		혈액, 체액,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	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것,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
시행규칙	처리방법	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·(배출) 전용용기 배출 ·(보관) 보관일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 ·(운반)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·(처리) 전용소각장에서 처리	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(사업장일반폐기물)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· (배출) 개별 밀폐포장하고, 전용봉투(고시)에 배출 · (보관) 보관일은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장소,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· (운반) 냉장차량 으로 운반 (기저귀만 별도로 운반) · (처리) 일반소각장 에서 처리
	유효기간	생략	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'냉장함을 적재한 차량'을 구비하여야 함 ※ 일반폐기물 중 '기저귀'만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

□ 시행일 및 경과조치

- (시행일) '19.10.29 자로 시행
- (경과조치) 인허가,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, **법적 경과조치 기간('19.10.29~12.31) 마련** (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부칙 제2조)
 - △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'의료폐기물'로의 처리 허용, △처리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'의료폐기물'로의 처리 허용

<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경과조치 규정 >

-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**2019년 12월 31일까지**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**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**를 갖추어야 한다.
-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**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**
-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**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**

□ ①·③조항 : '19.12.31까지 제반사항 준비, "의료폐기물"로 분류, 처리 허용

- '19.12.31까지 이해당사자(의료기관·업체)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전용봉투 확보, 별도 보관장소 마련, 배출자 신고, 처리업 인허가, 계약 체결 등 제반 사항을 준비

⇒ 경과기간 동안은 기저귀를 '의료폐기물'로 분류, 처리 허용

⇒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"사업장일반폐기물"로 처리

□ ②조항 : '19.12.31 이후라도,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기존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

⇒ 계약 만료일이 경과기간 이후에 도래할 경우, 해당 계약기간 동안에는 '의료폐기물'로 분류·처리 허용

⇒ 계약 만료 전 제반사항 준비 완료 시 "사업장일반폐기물"로 처리

Ⅲ. 일회용기저귀 배출·처리 업무처리 지침

1. 의료기관 등 배출자

가. 일회용기저귀 분류방법

□ "의료폐기물"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

⇒ **기존 대로 의료폐기물 배출·처리기준을 준수**

- ①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법정 감염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**
- ② **혈액이 묻은 기저귀**
- ③ 위 ①, ②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

< '2019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'에 따른 환자 등 분류 방법 >

- (감염병환자)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-3호에 따른 감염병 진단기준에 명시된 검사(이하 '확진검사') 결과 양성인면서 임상소견에 부합하는 환자
 - 다만, 파상풍의 경우,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임상증상이 환자에 부합되는 경우도 '감염병환자'로 간주
- (감염병의사환자)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
 -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며, 확진 검사 진행중인 경우
 -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, 확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
 - 확진검사결과 음성이나,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
- (병원체보유자) 확진검사 결과 양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
 - ※ **다만**,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임상증상이 없으며, 확진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의 경우,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환자의 기저귀는 **의료폐기물에서 제외, '사업장폐기물'로 분류**

□ “사업장폐기물”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(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)

⇒ 새롭게 규정되는 배출, 보관, 운반기준 준수

○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

※ 예)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감염
병환자의 기저귀 등

< 의료기관에서 꼭 유의해주세요! >

- 의료기관 차원에서, 간병인, 조무사 등 기저귀를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이 감염병의
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환자의 기저귀를 **의료폐기물로 배출**할 수 있도록, **해당
사실**을 환자의 **침대 또는 병실 앞** 등에 꼭 **표시**해주세요!
- **피물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므로**, 간병인, 조무사 등 수거자들에게 꼭 **교육**해주세요!

나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신고사항

- ◆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미
하며, 「사업장생활계폐기물」로 분류, 배출하여야 함
- ◆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·의원 등) 구분없이 “시·군·구”에 신고

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

○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이상 배출*하는 경우

*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(이하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) 뿐만 아니라
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

-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**대상에 해당
-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“**폐섬유류(51-27-99)**”로 세부 분류
- 폐기물을 배출, 수집·운반, 처리할때마다 **올바로시스템**에 폐기물
인계·인수 내용 **입력**하여야 함

*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

○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
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제외, **올바로시스템** 폐기물 인계서
입력 대상 제외 (※ 다만 **생활폐기물(종량제봉투)**로 배출 불가)
-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나, 「**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**」
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,
발생·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**보관장소에 비치**하여야 함

(사례 1)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(기저귀 포함) 250kg/일,
일반폐기물이 150kg/일 배출되는 A 병원에서,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/일,
일회용기저귀 200kg/일, 그 외 일반폐기물 150kg/일이 배출할 경우

⇒ 사업장폐기물(기저귀+그 외 사업장폐기물)을 총 **350kg/일** 배출하는 것으로,
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, 올바르게시스템 입력대상

(사례 2)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(기저귀 포함) 250kg/일,
일반폐기물이 50kg/일 배출되는 B 병원에서,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/일, 일
회용기저귀 200kg/일, 그 외 일반폐기물 50kg/일이 배출할 경우

⇒ 사업장폐기물(기저귀+그 외 사업장폐기물)을 총 **250kg/일** 배출하는 것으로,
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, 올바르게시스템 미입력대상

○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

-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
에는 **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**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

□ 신고 기한 : ‘19.12.31 까지

- 다만, 의료기관-처리업체 위탁처리 계약체결 기간 만료일이
‘19.12.31 이후일 경우, 해당 계약 만료 전까지 신고

다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보관방법

◆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을 위해 전용봉투와 별도보관장소를 '19.12.31이전까지 마련해야함. (단,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, 계약만료일까지)

□ 배출 방법

- 기저귀는 비닐(일반적인 비닐봉투)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, 환경부장관이 고시(붙임참조, '19.11.22, 제정 시행)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**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**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서는 안 됨

□ 보관 방법

- 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(냉장보관은 30일) 이내 보관 가능
-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(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)하고, 보관장소 주 1회 이상 약물소독
-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·비치하고 3년간 보존

라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(위수탁 계약)

□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

- (수집·운반)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중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폐섬유류, 51-27-99)”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·운반업체에 위탁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**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**
- (소각처분)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(소각) 업체에 위탁

2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 업체

- ◆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를 수집·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로서 냉장차량을 1대이상 구비한 경우임
- ◆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업 사항은 “시·군·구”에 허가를 받아야 함
- ◆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 차량 감차 시 “환경청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

□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, **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**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(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-27-99)
 -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의료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**감차 변경신고(→환경청) 후**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장비로 등록
- ※ 다만,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

□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(폐섬유류 51-27-99) 포함되어야 함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을 위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**

- 신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(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한정시)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폐섬유류, 51-27-99)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한정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신규 허가 가능
 -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**

< 수집·운반업체에서 꼭 유의해주세요! >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다른 의료폐기물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과 구분하여 수집·운반하여야 합니다.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으로 허가받은 냉장차량은 다른 폐기물을 함께 수집·운반 할 수 없습니다.

3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 업체

-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업체
- 사업장일반폐기물 **폐섬유류(51-27-99)**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업체는 **변경허가(신고) 없이*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·처분 가능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로 분류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하고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**폐섬유류(51-27-99)**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변경허가**를 받은 후 반입·처분 가능

4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
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는 별도의 **변경등록 없이*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 가능
 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)” 준수
 - 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, '19.11.22, 제정·시행, 불임참조

5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 및 처리업 관할기관

가.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

- ◆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처리업체 변경허가가 **'19.12.31 이전까지 조속히**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◆ 의료기관 등 배출자,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**적극 홍보** 요청

< 지자체에서 관할업체에 꼭 홍보해주세요! >

- 관할 업체(사업장생활계수집·운반, 소각)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,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, 관내 업체에 법령 개정사항 및 동 지침 안내(공문발송) 및 홍보(업무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)

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른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검토·확인(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**'19.12.31이전까지 수리**)
-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“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”로 분류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 신고 여부 검토·수리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 처리시 수탁확인서의 수집·운반업체 (※ 냉장차량 보유여부 확인) 및 소각업체 적정 여부 검토·확인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른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안내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RFID 태그 입력방법과 다르므로 올바른시스템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·인수 입력방법 안내

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업체 인허가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은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 수집·운반업으로 사업계획서 및 허가 검토·승인(**‘19.12.31이전까지 허가**)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(51-27-99) 포함
-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***
 - *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이외의 수집·운반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·운반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규 허가 대상
-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(51-27-99) 포함,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변경허가 신청**

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 인허가
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분은 “사업장일반폐기물” 중간처분(소각)업으로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허가 검토·승인
- 기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(소각)업체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영업대상 폐기물에 **폐섬유류(51-27-99)**를 추가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에 **변경허가 신청**

나. 관할 유역지방환경청

- ◆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 등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를 **‘19.12.31 이전까지 조속히 제작·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 요청**
- ◆ 의료기관 등 배출자,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**적극 홍보** 요청

<환경청에서 관할업체에 꼭 홍보해주세요! >

- 관할 업체(의료폐기물 수집·운반, 소각)가 금번 법령개정안의 경과조치 및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, 관내 업체에 법령 개정사항 및 동 지침 안내(공문발송) 및 홍보(홈페이지 게재 등)

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
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**변경등록 없이*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 가능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)” 준수 안내 [붙임 참조]

IV. 행정사항

□ (지자체)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가능 업체 월별보고
(‘19.11, 12월, →환경청·환경부)

-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 신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득하여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가 가능한 업체의 목록을 월별(11·12월)로
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 (※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)

□ (지자체)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현황 파악 보고
(‘20.1, →환경청·환경부)

- 관할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전수조사 후
적정 위탁처리계약 체결 여부 확인, 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
(※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)

□ (지자체·환경청)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적정 처리여부 지도
점검(‘20.1~)

- 의료기관 등 배출자,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 중 기저귀
인허가 득한 업체, 일반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점검 통해 일
회용기저귀 적정처리 여부 확인, 환경부에 지도점검 결과보고
(※ 별도 보고요청공문 발송 예정) 끝.

붙임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

환경부고시 제2019-209호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제3호나목7)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
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, 품질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
합니다.

2019년 11월 22일
환경부장관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·규격·품질·표시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폐기물관리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, 같은
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·규격·품질
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품질기준 등)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·규격·품질 및 표시
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
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
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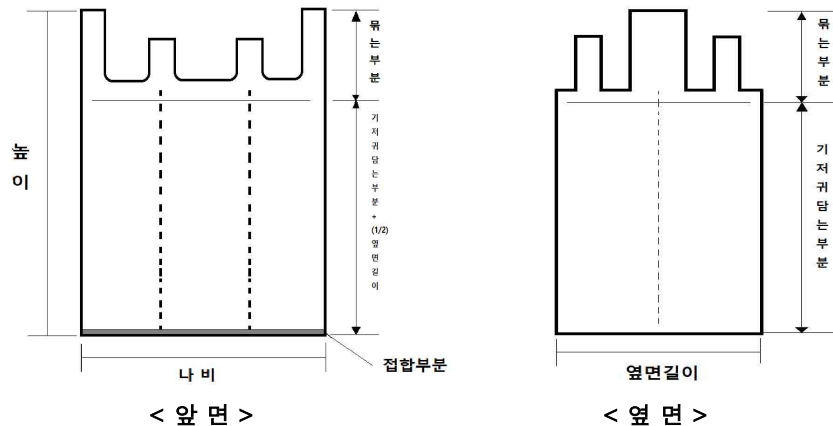
<별표1>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·규격·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

1. 구조 및 규격

- 1) 폴리에틸렌 재질(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, 고밀도 폴리에틸렌)로 제작하며,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,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.
- 2) 봉투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, 묶기 용이하도록 묶는 부분을 [그림 1]과 같이 두고,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3)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[그림 1]와 같이 M자형 모양으로, 펼쳤을 때 옆면이 확장되고 바닥은 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하며,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.

[그림 1] 전용봉투의 구조 및 모양



- 4) 봉투의 규격은 [표 1]과 같이 구분한다.

[표 1]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

종 류 (용량 : L)	높 이 (cm)				나 비 (cm)	옆면길이 (cm)
	총높이*	기저귀 담는부분	묶는 부분	접합 부분		
10	51	26	15	1	22	18
20	63.5	33	18	1	27	23
30	73	38	21	1	31	26
40	78.5	41	22	1	34	29
50	84.5	44	24	1	37	31

* 총높이 = 기저귀 담는 부분 + 옆면길이의 1/2 + 묶는부분 + 접합부분 (※ [그림1]의 앞면 참조)

※ 봉투 규격은 (기저귀 담는 부분 x 나비 x 옆면길이)가 실제 봉투의 용량(L)이 되도록 조정하되 길이는 ±5%의 오차범위를 허용함

2. 품질

전용봉투의 품질 및 기준은 [표 2]에 따른다.

[표 2] 전용봉투 품질 및 기준

항목		품질 및 기준			
		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		고밀도폴리에틸렌	
		40, 50L	10, 20, 30L	40, 50L	10, 20, 30L
두께		0.05mm 이상	0.035mm 이상	0.045 mm 이상	0.035mm 이상
봉투의 인장강도		2,650 N/cm ² 이상	2,650 N/cm ² 이상	4,000 N/cm ² 이상	4,100 N/cm ² 이상
봉투의 신장률		460% 이상	440% 이상	400% 이상	360% 이상
노치 후 인열 강도	보통	750N/cm 이상	700N/cm 이상	1,000N/cm 이상	1,000N/cm 이상
	접은곳	700N/cm 이상	600N/cm 이상	900N/cm 이상	900N/cm 이상
접합상태		공기를 넣어 1분간 견뎌야 할 것			

※ (두께 허용차) 평균값 ±8%, 최대·최소값 ±15%의 오차범위를 허용

3. 표시(색상 및 인쇄사항)

가. 봉투의 색상

- 1)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한다.
- 2)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.

나. 인쇄사항

- 1)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,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.
- 2)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가) 앞면
 - (1) ‘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’ 문구와 배출정보를 인쇄한다.

**의료기관
일회용기저귀**
< 배출 정보 >

배출자	
사용개시 연월일	
수거자	

나) 뒷면

- (1) 봉투의 뒷면에는 ‘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’문구 관련 사항을 인쇄한다.

**의료기관
일회용기저귀**
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			
봉투 제조사명		생산년도	
봉투용량 (규격)	ℓ (총높이 × 나비 × 옆면길이)	로트번호*	

* 로트번호는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를으로 선택인쇄사항임

- 3)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.
- 4) 인쇄내용의 크기(문구 및 표의 가로 길이)는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/5 이상이어야 한다.